

## 「평창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2년 01월 13일 박찬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22년 01월 17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 1. 제안이유

-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1항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평창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안 제3조)
-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안 제4조)
- 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항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라. 복지점수 부여, 한도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마.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바. 평창군수와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취지가 있습니다.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안 제4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항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복지점수 부여, 한도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는 평창군수와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각각 정하였으며,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4 참고자료: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